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3. 9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평생교육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평생교육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와 맞춤형 최신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달서구 진로진학지원 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,
-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은 진로진학지원센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2020년 7월 13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으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2020년 9월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거쳐 수탁 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된 미래인재교육원(주)과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20. 12. 1. 개소하였습니다.

-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(상화로 272)에 위치하고 있으며, 2020. 9. 3. LH와 업무협약을 통해 평생학습관 건립 시까지 무상임대 사용 중입니다. 현 수탁기관은 미래인재교육원(주)으로 운영인력은 센터장, 연구원, 사무원 총 3명이고, 2022. 11월 재계약되어 총 위탁기간은 2020. 12. 1.부터 2023. 12. 31.까지입니다.
- 주요사업으로는 진학상담 및 입시 정보제공, 체험중심 맞춤형 진로 직업 프로그램, 수요자 맞춤형 학습교육지원, 교육네트워크 운영, 지역특색반영 체험활동 등을 운영 중입니다.

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9월 의회 동의 후, 10월 모집공고를 통하여 위탁체(자)를 공개모집하고, 11월 중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진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로 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|
| 의 번 호 | 00923116 |
|-------------|----------|

제출일자: 2023. 9.

제출자: 달서구청장
(평생교육과장)

1. 제안이유

- 자유학기제 시행과 진학 및 입시정책 등 다변화되고 있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 교육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, 2020. 12. 1. 달서구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중임.
- 2023. 12. 31. 자로 위탁운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진로진학지원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
- 「진로교육법」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○ 필요성

- 진로진학 교육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, 민간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진학상담 및 입시관련 정보 제공
-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지원
- 수요자 맞춤형 학습컨설팅
- 교육네트워크 운영 등

라. 위탁시설 현황

- 시설명칭: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
- 장 소: LH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(상화로 272)
※ 평생학습관 건립 시(2025. 3월)까지 임시 사용(무상임대)
- 시설규모: 88m²(사무실 1, 상담실 1, 방문객 응대공간 1)
- 운영시간: 평일(월~금) 09:00~18:00/토·일·공휴일 휴무
※ 학생들의 수업 일정 및 입시상담 등 시기에 따라 주말 탄력적 운영

마. 위탁기간: 3년(2024. 1. 1.~2026. 12. 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선정

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: 정책자문위원회 자문

- 경제적 효율성,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- 전문인력을 통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확보·활용하여 콘텐츠 개발 등 활발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음.

- 사업계획에 따른 객관적 성과 측정이 용이하고, 특히 성과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, 성과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 현장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붙임 1
-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: 붙임 2
- 향후 추진일정
 -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및 접수 : 2023. 9.~10월
 -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2023. 10.~11월
 - 선정결과 공고 : 2023. 11월
 - 위탁계약 체결 : 2023. 11월

불임 1 관계법령

□ 진로교육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③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
2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7조(운영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진로·진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 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 (개정 2020. 12. 31.)

불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| 검토기준 | 검토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로진학지원센터의 본질적 업무수행에 있어 직접운영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운영이 효율적 · 위탁운영을 통한 인력확보로 일자리 창출과 공무원의 행정부담을 완화 · 민간위탁에서도 진로진학 담당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가능하려면 고용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. |
|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공무원 및 공무직 인력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, 전문적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함 · 법과 규정,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의 서비스 공급이 필요 · 공공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위탁 운영업체에 대한 정기적 감독·관리 필요 |
| 경제적 효율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탁운영으로 인건비 상승 및 인력충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· 전문인력을 통한 지역 내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 · 경제적 효율성의 경우 민간위탁, 직접운영은 어떠한 측면에서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름 |
|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확장된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 · 현장 경험이 많은 인력의 전문성을 통해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진행 |
| 성과 측정의 용이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민들 대상 사업만족도 조사,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제안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정량, 정성 평가측정과 성과분석에 용이함 · 성과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, 성과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정책 현장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|
|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·수탁 협약사항의 정밀한 검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관리, 평가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|
|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진로진학이 공익적 사업의 한 축을 형성 하는 만큼 독과점의 가능성이 낮음 · 시장여건 영향 최소화를 위해, 수탁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관련 업무와 연계된 사업 홍보를 제재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함 |